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예산처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필요 항목을 설립시 신고한 모든사항에서 주요사항(①정관, ②주된 사무소 소재지, ③임원 정보, ④출자금 납입총액, ⑤조합원 수 등 5개 항목)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임.

* ④출자금 납입총액, ⑤조합원 수 변경이 잦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항목의 경우 연 1회 일괄신고 허용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,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정관
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3. 임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(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·법인등록번호·주소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). 다만,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.
4. 출자금 납입총액
5. 조합원 수

제7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제1항과 제2항을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”로, “본다”를 ““이사장”은 “회장”으로, “조합원”은 “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”으로 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.6.24.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) ① <생략> <신설>	제7조(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) ① <현행과 같음>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정관 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. 임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(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·법인등록번호·주소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). 다만,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. 4. 출자금 납입총액 5. 조합원 수
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, 단,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

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협동조합”은 “협동조합연합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본다.	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④ ----- ----- ----- 부터 제3항까지를 -----, ----- -----, “이사장”은 “ 회장”으로, “조합원”은 “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”으로 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	
연 락 처	(044) 214 - 1752